

보육교사 승급 신청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 신청방법 안내

□ 대상자

○ (1급 승급 신청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2급 승급 신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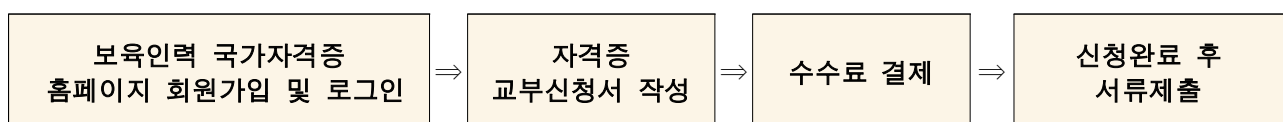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경력인정 기준

- ①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1]의 비교에 따라 다음의 경력에 한해 인정
·어린이집 경력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를 제출
·방과후 유치원 경력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등은 인정되지 않음)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를 제출
※ 유치원 근무경력은 해당 유치원 근무 당시 방과후 과정 운영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교육청 발행 경력 증명서에 방과후 과정 여부가 기재되거나, 방과후 과정 운영 관련 교육청 발행 공문을 첨부서류로 제출
·육아종합지원센터 경력 :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를 제출
·일시보육서비스 지정기관 경력 : 기관장,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서비스지정기관장 발행 경력증명서를 제출
- ②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은 승급 이전에 취득한 자격을 취득(인정)한 시점 이후부터 경력인정
- ③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교사 승급을 위한 경력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④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총 209시간을 1개월로 인정하되, 시간제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보육업무에 종사한 총 경력증명서 1부, 시간제로 근무한 어린이집 경력증명서 1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경우에 따라 자격인정 시점 산정을 위해 근로계약을 제출할 수 있음).

□ 자격 신청방법

○ 자격증 신청절차



○ (교부신청서 작성)

- 기본사항 : 회원가입 시 등록 사항으로 연계(발송지 주소는 별도 지정 가능)
- 학력사항 : 최종 학력사항을 입력(필수사항)
- 경력사항 : 자격취득 시 인정되는 근무기관에서의 경력을 입력(권장사항)
- 보수교육 : 보육교사 2급 또는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및 일반 직무교육 입력(권장사항)

○ (수수료 결제) 신청 건당 수수료 1만원 납부(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이용)

※ 자격증 신청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 불가

○ (서류 제출) 자격증 교부신청서, 승급교육 수료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자격증명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 서류보내는 곳 : (우)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보육인력개발국 자격검정팀 담당자 앞

□ 제출서류

○ (1급 승급 신청자)

- 제출서류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1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또는 수료증 사본,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원본

○ (2급 승급 신청자)

- 제출서류 :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2급 승급교육 수료증명서 원본 또는 수료증 사본,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원본

<기타 유의사항>

- (성명변경 시) 변경 전·후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원본 제출
- (컬러복사/스캔 서류)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승급교육 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컬러 복사(스캔)본으로 제출 시 인정되지 않음
- (사진제출) 자격증 제작용 사진은 인터넷 신청 시 등록한 사진파일을 이용하므로 별도로 반명함판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이외 보육교직원 자격증 관련 문의>

- ①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묻고 답하기 게시판-FAQ/Q&A
- ②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열린광장 게시판-FAQ/Q&A
- ③ 상담전화 1661-5666(회선 2번, 자격증 관련 문의)
1566-0233(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

※ 전화상담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FAQ 또는 Q&A 게시판, 카카오톡 '보육교사 자격' 친구추가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